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91 발의연월일: 2024. 6. 18.

발 의 자:김용만·김병기·강준현

강훈식 · 김남근 · 이강일

이훈기 • 박상혁 • 김현정

민병덕 · 조승래 · 이인영

이정문 • 한준호 • 서미화

백승아 • 이수진 • 박수현

이언주 · 정준호 · 조 국

민형배 · 오세희 · 박희승

김영화 · 양부남 · 김성화

조인철 · 이재관 · 이광희

최민희 • 이용우 • 위성락

전혀희 · 문금주 의원

(359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 향상및 신뢰받는 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대통

령이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검증된 적절한 인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이에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후단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2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청문회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은	②		
고충민원과 부패방지에 관한 업			
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			
한다. <u><후단 신설></u>	<u>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u>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